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(펀드 코드: A4394)

|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[낮은 위험]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|--|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 | |
| 매우 높 취험 | 사 아 아 아 | 다소 높 취 | 보이 | 아타 | 마나의 | | | |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 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,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요약정보는 **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**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·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<mark>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</mark>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요약정보]

| 투자 목 적 및 투자전략 | 이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약 70%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, 나머지는 국내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수익을 추구합니다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분류 | 투자신탁, 증권(채권혼합형), 개방형(중도화매가능), 추가형, 모자형 |

| | 3111 A 2 2 |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%) | | | | |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단위:천원)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| 클래스 종류 | 판매 수수료 | 총보수 | 판매보수 | 동종유 형 총보수 | 총 보수 · 비용 | 1년 | 2 년 | 3년 | 5년 | 10 년 |
| | 수수료선취- 오프라인(A) | 납입금액의 0.3%이내 | 0.800 | 0.300 | 0.770 | 0.805 | 114 | 202 | 293 | 488 | 1,049 |
| | 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 (C) | - | 1.000 | 0.500 | 1.110 | 1.005 | 106 | 215 | 329 | 571 | 1,264 |
| 투자비용 | 수수료선취- 온라인(Ae) | 납입금액의 0.15%이내 | 0.650 | 0.150 | 0.620 | 0.655 | 84 | 155 | 230 | 389 | 852 |
| 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(Ce) | - | 0.750 | 0.250 | 0.730 | 0.755 | 79 | 162 | 248 | 431 | 961 |

(주 1) '1,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'는 투자자가 1,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(판매수수료 + 총보수비용)을 의미합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

(주 2)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(주 3)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(29 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주4) '동종유형 총보수'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(2025.5.30 기준)
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

| | | | | | | ,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종류 | 최초 - 설정일 | 최근 1년 24.6.27 ~25.6.26 | 최근 2년 23.6.27 ~25.6.26 | 최근 3년 22.6.27 ~25.6.26 | 최근 5년 20.6.27 ~25.6.26 | 설정일이후~ 25.6.26 |
| 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(C)(%) | | 2.64 | 1.99 | 1.55 | 1.58 | 2.28 |
| 비교지수(%) | 2011.6.27 | 4.02 | 4.07 | 3.81 | 2.23 | 2.41 |
| 수익률 변동성(%) | | 2.55 | 2.77 | 3.42 | 3.26 | 2.99 |

- (주 1) 비교지수: KIS 국고채 1~2 년×100%
- (주 2)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(주 3)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
- (주4)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,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(운용펀드 기준)

| | | | | | | _ | | | 기준 / 단위 | : 개, 억원, 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운용현 | 황 | | 동종 집합 균 수익률 | 투자기구 분(채권혼합 | 형) | 운용 |
| | 성명 | 생년 | 직위 | 집합투자 | 운용 | 운용 | | 운용사 | | 경력 년수 |
| | | | | 기구 수 | 규모 | 최근 1 년 🤚 | 최근 2 년 | 최근 1 년 | 최근 2 년 | |
| | 김내혁 | 1982 년 | 주식책임 운용역(부장) | 8 | 380 | _ | - | | 6.40 ⁻ - | 11년 1개월 |
| | 하현진 | 1979 년 | 주식부책임 운용역(이사) | 15 | 1,286 | 7.02 | - | | | 12년 2개월 |
| 운용 전문인력 | 김성현 | 1996 년 | 주식부책임 운용 역(대리) | 11 | 904 | 7.02 | - | 6.90 | | 3년 5개월 |
| | 전 춘봉 | 1980 년 | 채권책임 운용역(부장) | 32 | 7,683 | 6.90 | 6.40 | : | | 9년 5개월 |
| | (주 1) '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"부책임운용전 문인력"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 (주 2)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주 3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 (주 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. (주 5) '운용경력년수'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·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·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·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·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·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·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| | | | | | | | | |
| 주요투자 위험 | 다 다 한 소실위험 기별위험 개별위험 | 면 에 이 다 내 당 및 기 | 사협회, 판매회사 투자신탁은 실 . 따라서 투자운 지 감소의 위험 사자도 투자손실 자신탁재산을 주 타 거시경제지표 종목 발행회사의 | 적배당상품으 일본의 전부 <u>!</u> 은 전적으로 <u>!에 대하여 ^친</u> 주식, 채권 및 E의 변화에 따 | 투자 로 은행 (또는 일부 투자자가 밖임을 지기 파생상품 라른 위험() | 위험의 주요 예금과 달리 에 대한 손 부담하게 5 시 아니합니다 등 등에 투자 네 노출됩니다 | 내용 예금자5 실의 위함 리고, 집합 가. 함으로써 가. 또한, | 보호법에 때 성이 존재하 라투자업자! 주식의 7 투자신탁자 | h며 투자금 나 판매회시 나격 변동, 내산의 가치 | 액의 손실 나 등 어떤 이자율 등 는 투자대 |

| | 증권차입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, 차입한 주가가 예상 상승하는 경우,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,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매수진 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|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, 원활한 분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. | | | | | | | |
| 매입 방법 | · 17시 이전: 2 영 · 17시 경과후 : | | | 환매 | | 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| | |
| 환매 수수료 | 해당사항 없음 | | | 방법 | · 1/ 시 성과후 · 지급 |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| | |
| 기준가 | 산정방법 | - 1,000 좌 단위 | 로 원미만 성 | 넷째자리에서 | 반올림하여 원미민 | 등액)/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난 둘째자리까지 계산 | | |
| 1,51 | 공시장소 | 판매회사 본·영업 회 인터넷 홈페이 | | | | om) · 판매회사 · 한국금융투자협 | | |
| | 구 분 | | | 1 | 서의 주요내용 | | | |
| | 집합투자기구 | 집합투자기구 단 | 계에서는 별 | <mark>로</mark> 드의 소득과 | ト세 부담이 없는 것 | !이 원칙 입니다. | | |
| | | 과세 시기 | | 세율 | | 세액 공제 | | |
| 과세 | 수익자 | 투자신탁의 수 환매하는 시점 의 과세를 하지 연금저축계좌에 인출시 과세 | 익증권을 에 별도 않으며, 서 자금 | 1) 연금수량 연금소득세 에 따라 변 단, 이연퇴? 방소득세 포 2) 연금외수 기타소득세 세 포함) | 5.5~3.3%(나이경, 종합과세 가능) 식소득은 3.3% (지함) :함) :령시 과세 16.5% (지방소득 | (2023.1.1.이후)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-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| | |
| | 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| | | | | | | |
| 전환절차 및 방법 | 하는 것이 좋습니! 해당사항 없음 | 1. | | | | | | |
| 집합투자업자 | 트러스톤자산운용(| 주) (대표번호: 02- | 6308-050 | 00 / 인터넷 | 홈페이지:www.t | rustonasset.com) | | |
| 모집기간 | 효력발생 이후 계 | | | . 매출 총액 | |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| | |
| 효력발생일 | 2025. 7. 10. | | | 속 기간 | | ·계약 기간은 없음 | | |
| 판매회사 | 집합투자업자(www.trustonasset.com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| | | | | | | |
| 참조 |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(43 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

| | 이 집힙 | 투자기구는 |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| 펀드특성 | 형에 따라 3 | 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| | 종류 | (Class)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|
| | 판매 | 수수료 선취(A)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수수료 | 수수료 미징구(C)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판매 경로 | 온라인 (e)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| | 오프라인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
| | | 온라인 슈퍼(S) |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
| | | 고액 (I) |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랩 (W) | Wrap Account(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)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무권유 저비용(G) |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개인연금 (P) |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
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

· 증권신고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
· 투자설명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kofia.or.kr),

집합투자업자 (www.trustonasset.com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
·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

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
· 자산운용보고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
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(www. trustonasset.com)

· 수시공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
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(www. trustonasset.com)